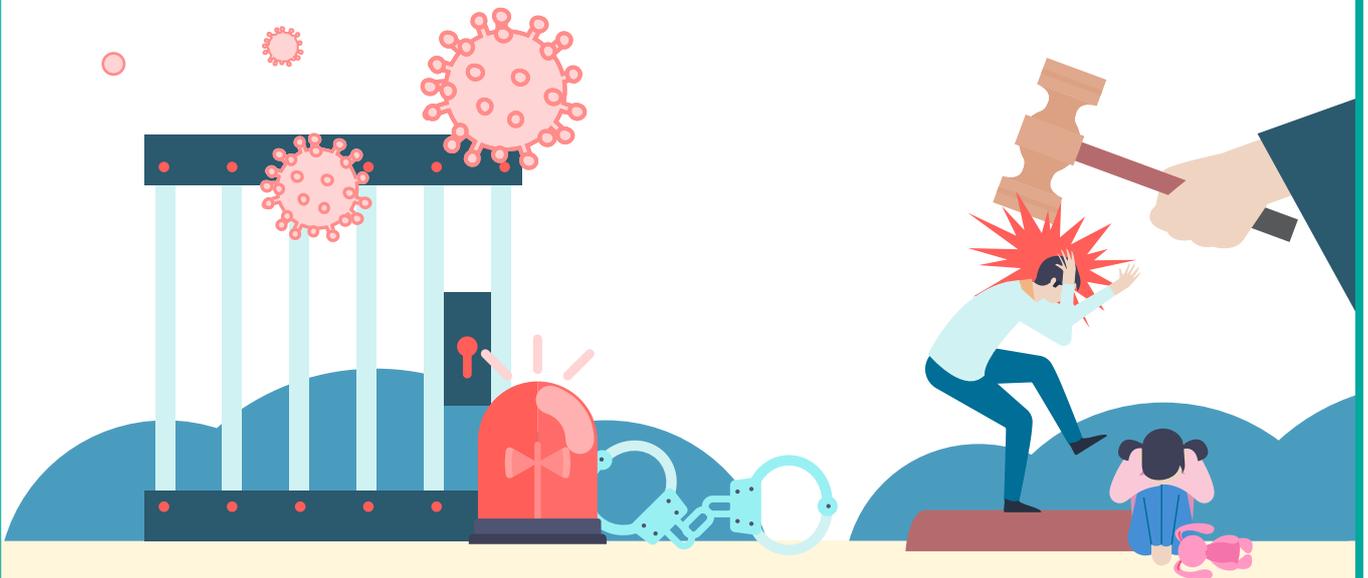


2021년 제59회 한국교정학회 · 법무부 교정본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

2021. 6. 4.(금) 14:00 ~ 18:00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진행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법무부 교정본부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시 간	내 용	
13:40 ~ 14:00	참가자 ZOOM 회의실 참석	
14:00 ~ 14:20 (총 20분)	식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응렬/한국교정학회 회장</li> <li>- 이영희/법무부 교정본부장</li> </ul> </li> <li>○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섭/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li> </ul> </li> <li>○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종민/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li> </ul> </li> <li>○ 감사패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식/한국교정학회 명예회장</li> </ul> </li> <li>○ 학술상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자 : 조민경/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li> </ul> </li> </ul>
14:20 ~ 17:00 (총 160분)		주제 발표 및 토론
17:00 ~ 18:00 (총 60분)	질의 응답 등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장 최응렬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성범죄자 처우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59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교정시설이 더 이상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수용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이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구치소 처럼 고층빌딩 교정시설은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승강기를 통한 단체 이동 등 감염에 취약한 구조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수용자 처우와 인권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요즘 들어 부쩍 언론보도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아동 성범죄자의 처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과 관련된 범죄, 특히 그 대상이 아동이라면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부터 효과적인 치료와 처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과거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실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정학회는 매해 이슈가 되는 교정 분야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교정행정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술대회를 위해 애쓰신 사회자·발표자·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 해주신 학회 회원 및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한국교정학회 회장 **최 응 렬**

## 개회사



반갑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영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 어려운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국교정학회 최응렬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성범죄자 처우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한국교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교정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정본부는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실현을 목표로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복무제의 성공적 정착, 정신 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였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방역체계와 매뉴얼을 재정비하였으며,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전국의 교정공무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교정시설 내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을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정본부는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학적·변태적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지과정 20시간과 특별과정 150시간을 추가하는 등 심리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치료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대국민 교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수용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학술대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 영 희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제59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준비에 힘쓰신 최응렬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학술대회의 장을 열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교정학회는 교정 관련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여, 대한민국 교정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형사사법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교정행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 교화와 재사회화를 담당하고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 교정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 성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특별한 처우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가 다양한 교정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현장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되는 진단이 현장에 잘 전달되어 선진 교정행정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오늘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고견에 귀 기울이며 재범방지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9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국회의원 김 종 민



<p> <b>개회사</b></p> <p>한국교정학회장 회장 <b>최응렬</b></p>	<p><b>iv</b></p>
<p> <b>개회사</b></p> <p>법무부 교정본부장 <b>이영희</b></p>	<p><b>vi</b></p>
<p> <b>축사</b></p> <p>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b>김종민</b></p>	<p><b>viii</b></p>
<p> <b>제1주제</b></p> <p><b>‘감염병 예방’과 ‘수용자 처우’ - 코로나19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 : <b>강태경</b>/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li> <li>• 토 론 : <b>홍성수</b>/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li> <li style="padding-left: 20px;"><b>김명재</b>/안양교도소 공중보건 의사</li> </ul>	<p><b>1</b></p>
<p> <b>제2주제</b></p> <p><b>(아동) 성범죄자 효율적 처우 방안 -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 : <b>이희정</b>/법무부 심리치료과장</li> <li>• 토 론 : <b>신기숙</b>/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장</li> <li style="padding-left: 20px;"><b>김병배</b>/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교수</li> </ul>	<p><b>19</b></p>
<p> <b>부록</b></p> <p><b>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b></p>	<p><b>35</b></p>

2021년 제59회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 제1주제

#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 처우’

- 코로나19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

- 발표 :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명재/안양교도소 공중보건역사



한국교정학회 제59회 춘계학술대회

#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 처우'

-코로나19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 코로나19 팬데믹 속 전 세계 교정시설의 위기

2



2020년 3월 26일, 프랑스 법무부 코로나 확산 우려에 수감자 6,000명 조기 석방 계획 발표  
“수감기간이 2개월 미만인 수감자 중 석방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20CLJT0U6>

3



2020년 5월 기준, 태국 교도소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 육박  
“재소자 ‘4×10m 방에 60~70명 바로 옆에서 누워서 자’ 1㎡당 약 2명꼴”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6021700076?input=1195m>

1



캔자스주 수감자 5,100명 코로나19 감염, 아칸소주 수감자 9,700명 코로나19 감염  
 “美 감옥 코로나 확진은 사형 선고…죽어가는 수감자 지켜봤다”

[출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009510002208?did=NA>

5



**37일 만에 1명→1108명, 동부구치소 감염 왜 계속 확산되나**

“1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견된 즉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면… 전수검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12월 18일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180여 명을 강당에 모이게…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출처: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2854>

6

## 교정시설 내 코로나 감염 현황 및 주요 일지

- 2020년 2월
  - '유리벽 없는' 특별면회 금지
  - 검찰 '소환조사 최소화', 법원 '재판 연기'
  - 대구구치소 수용자 형집행정지
- 2020년 4월
  -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구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 2020년 1월에서 11월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총 29명의 확진자 발생
  - 코로나19 1·2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

【월별 교정기관 확진 직원·수용자 현황】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확진자 수	0명	3명	8명	0명	1명	0명	0명	0명	0명	1명	16명	29명

7

## 교정시설 내 코로나 감염 현황 및 주요 일지

- 2020년 12월 19일 서울동부구치소 185명의 확진자 동시 발생, 이후 급속 확산
  -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확진자(직원·수용자) 1,173명에 이룸

【교정기관 확진 직원·수용자 현황】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구 분	전체 확진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비고
확진자 수	1,224명	1,173명(95.83%)	1.10. 00시 기준

- 2021년 1월
  - “보건마스크 사게 해달라”는 재소자 진정, 법무부 기각
  - 수용자에게 매일 마스크 지급, 지원에게 주 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 2021년 2월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면회 재개(단, 집단감염 '서울 동부 및 남부 구치소, 청주교도소' 제외)
- 2021년 3월
  - 집단감염 82일만에 교정시설 확진자 전원 격리해제

8

## 서울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 감염 원인

- 구조적 3밀 환경
  - (밀집) 12층 건물 특성상 적은 수의 엘리베이터를 통한 층간 이동 시 수시 접촉 가능성 높음
  - (밀집) 3인 또는 5인 혼거실이 전체 거실의 46.5% 차지
  - (밀폐) 여러 개의동이 상호연결되어 있는 'ㄷ' 자 구조로 환기에 취약
- 과밀 수용
  - 수용자 최소 확진 시 동부구치소의 수용인원은 2,419명으로 정원(2,070명) 대비 116.9% 수용
  - 확진자 및 접촉자를 다른 수용자와 격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어려움
- 소극적 초기 대응
  - 3밀 환경을 고려한다면 11월 27일 확진자 최소 발생 시 전수검사를 했어야(12.18. 전수검사)
- '서울동부구치소'만의 문제인가?
  - 전국 교정시설 혼거실 비율 및 평균 수용률 대동소이(2020. 11. 27. 기준 114.2%)
  - 향후 교정시설 신축 시 고층 건물 수개동이 상호연결된 구조 도입에 신중해야

## 코로나19 팬데믹 속 수용자 및 교도관의 건강권 위기

“재소자 건강에 관한 제 석사 학위논문을 국내외에서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다른 취약계층도 많은데, 왜 하필 죄짓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냐고요. 저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감금생활을 하면서 **쫓겨**를 치르는 것이지 아플 때 방치 당하는 것까지 징역살이에 포함될 이유는 없다고요.”

김승섭, *아름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중에서

“바깥 사회와 비교할 때 **비인간화**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간이 구금시설인 것이다. **자유**의 박탈은 그 차제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형벌이며 ...”

국가인권위원회, *[교정편]인권길라잡이* (2002) 중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불허했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990명에 수용인원 5만4624명으로 **정원 초과 과밀 상태**다. ... 솔직히 한국의 케이(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민낯을 낱알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institution)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와 비가시화된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권영숙,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 (2021. 1. 10. 한겨레 기고) 중에서

11

## 수용자의 건강권 - 국제규범

- **사회권 규약 제12조**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12*
  - 모든 사람은 수감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건강 관리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넬슨 만델라 규칙**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교도소와 기타 구금 장소에 있는 사람은 교도소 등의 밖과 동일한 건강관리의 기준을 누려야 하고, 법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 없이 필요한 건강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해야 한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
  - 각 회원국에 수용 인원을 줄이라고 촉구하면서,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수용자와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그리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권고(2020. 3. 25.)
- **신체·정신건강 향유권 특별보고관**
  -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과밀수용과 폭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병의 전파를 야기하는 비위생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2018. 4. 10. A/HRC/38/36)

12

## 수용자의 건강권 - 국내규범

- 형집행법 제30조
  -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4조
  -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교정시설은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교정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에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를 확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의료기능 부족 환경은 대규모 감염병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1. 1. 6.)

13

##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SAC, 코로나19 수용자 인권 지침 *Developed by OHCHR and WHO*

14

## 코로나19 수용자 인권 지침

### • 목적

- ▶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높은 밀도로 집중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위생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처지에 있다. 국제 기준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 지원

- ▶ 정부당국은 교도소 과잉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정부당국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이주민 구금을 대체할 비구금식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 ▶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
- ▶ 수용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과잉 수용을 줄이며, 국제 기준 준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코로나19는 미결구금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하여 경찰, 기타 법집행기관 및 사법부의 관여를 유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15

## 코로나19 수용자 인권 지침

### • 건강

- ▶ 피구금자가 외부 공동체와 동일한 기준의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 모든 구금 조치들은 필요성과 비례원칙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정기적 검토 대상이어야 한다.
- ▶ 자유가 박탈된 사람은 입소 시 검진을 받아야 하고, 필요 시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모든 자유 박탈자가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지체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피구금자가 석방되면, 환자인 경우는 돌봄을 받고 건강 검진을 포함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검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노인 및 기저질환이 있거나 취약성이 높아진 사람, 구금 아동 및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구금된 아동, 임산부, 장애인의 특수한 보건상 필요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 서비스는 항상 성(性)특수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16

## 코로나19 수용자 인권 지침

### • 정보

-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관련된 정보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자유가 박탈된 사람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관련 정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발생 예방 조치

- 수용시설 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당국은 관련한 모든 조치가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당국은 예방 조치의 채택과 예방 조치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있어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17

## 코로나19 수용자 인권 지침

### •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발생 예방 조치 (계속)

- 대면 방식의 가족 면회를 화상회의, 전자통신, 전화통신과 같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해 구금 당국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구금 중인 모든 아동과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포함한 기타 취약한 수감자에게 가족 방문 및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수용시설에서의 고립 또는 격리 조치는 합법성, 비례원칙,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시적이며 점검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독방 수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립 또는 격리 조치가 아동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더 가혹하거나 부적절한 조건의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18

## 코로나19 수용자 인권 지침

### • 수용시설 담당자

- 수용소 직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고위 관리직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동안 직원의 업무를 상황에 앞서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비상대책계획을 공유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의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의료 및 위생 규정과 관련한 지식, 기술 및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특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도소 및 수용소 직원에게는 비누, 손 소독제 및 개인보호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동 보호 교육 및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 • 요약

- 과밀수용 및 구금납용 해소, 시설 환경 개선
- 검진 및 치료를 통한 시의적절한 의료적 개입, 특수한 수용자의 보건상 필요 사항 고려
- 코로나19 예방 및 억지 관련 조치 정보를 수용자 및 그 가족과 공유
- 인권존중 원칙 준수 및 행정 투명성 제고, 접견방식 다변화, 합법·비례·필요·한시적 조치, 차별금지
- 비상대책계획 수립 및 실행, 직원 권리 존중 및 가족 지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직원 안전 도모

19

## 미 연방 질병통제관리센터 *CDC*, 교정 및 구금 시설 가이드

20

## CDC 교정 및 구금 시설 가이드

### • 주요 내용

- Operational and **communications** preparations for COVID-19
- Enhanced cleaning/disinfecting and **hygiene practices**
- **Social distancing** strategies to increase space between individuals in the facility
- Strategies to limit transmission from **visitors**
- Infection control, including recommend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nd **potential alternatives during PPE shortages**
- **Verbal screening and temperature check protocols** for incoming incarcerated/detained individuals, staff, and visitors
- **Testing** considerations for SARS-CoV-2
- **Medical isolation** of individuals with confirmed and suspected COVID-19 and **quarantine** of close contacts, including considerations for **cohorting** when individual spaces are limited
- **Healthcare evaluation** for individuals with suspected COVID-19
- **Clinical care** for individuals with confirmed and suspected COVID-19
- Considerations for people who are at **increased risk for severe illness** from COVID-19

21

## 태국 사법 연구원 *TJ*, 코로나19 상황 교정 정책 권고

22

## TIJ 코로나19 교정 정책 권고

### • 주요 내용

#### ▶ 비구금 조치 (과밀 수용 해소 노력)

- ✓ 위험성 낮은 범죄자(특히, 노인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게 비구금적 형벌 부과
- ✓ 위험성 낮은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임시석방, 가택연금 조치 및 불구속 수사·재판 활성화
- ✓ 석방된 범죄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효과성 제고

#### ▶ 교정시설 관리에 관한 일반 조치

- ✓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 그룹에 대한 특별 의료 조치 시행
- ✓ 수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 교육 실시
- ✓ 비대면 접견 방식 적극적 도입
- ✓ 신입 수용자 격리
- ✓ 수용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 단축(특히, 수면 공간)
- ✓ 수용자 석방 전 건강 스크리닝
- ✓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 지급

23

## 코로나19 ‘위기’를 교정 혁신 ‘기회’로?

24

##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 법무부의 초기 대응 문제

- 시기를 놓친 전수검사
- 소극적 마스크 대책
- 소극적 정보 공개

11월27일	30일 이전	30일 이후	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첫 확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마스크 지급</li> <li>• 확진자 발생 또는 출징, 외진 시 KF94마스크 지급</li> <li>• 보건마스크 자비 구매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 수용자에 KF80 이상 마스크 지급</li> <li>• 일반 수용자에 보건마스크 구매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수용자에 1주일에 3매 KF94마스크 지급</li> </ul>

(출처: 한겨레 2021.1.3.자 기사)

###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마련 (2021. 1. 20.자 보도자료)

-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 강화 (단기)
  - ✓ 검사 기반의 조기 발견 역량 강화(입소 전 검사, 신입수용자 격리 및 검사, 직원 정기 검사 등) - 물적 역량
  - ✓ 방역 및 모니터링 강화(수용자 및 직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의무화) - 물적 역량
-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 (단기)
  - ✓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계획 등 교정기관 별 대응 계획 수립 - 물적 역량
  - ✓ 감염병 신속 대응팀 구성하여 방역당국과 유기적 협력 - 제도적 역량
  - ✓ 집단 감염에 대비한 전국 단위 분산 및 이송 계획 수립 - 외부 역량

25

##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마련 (계속)

- 범정부적 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단기)
  - ✓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 신설 - 외부 역량
  - ✓ 중대본, 방대본, 질병관리청,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 외부 역량
  - ✓ 방역 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인력 지원 등 - 외부 역량
- 과밀수용 해소 (단기)
  - ✓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유입 인원 감소 유도(불구속 수사 및 재판) - 제도적 역량, 외부 역량
  - ✓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 - 제도적 역량, 인적 역량
- 교정시설 조정 및 3밀 수용 환경 개선 추진 (중장기)
  - ✓ 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제도적 역량, 외부 역량
  - ✓ 1인당 수용 면적 향상 추진 및 독거실 확충 - 물적 역량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강화 (중장기)
  - ✓ 독립 수용동 건축 및 분리 수용 시설 신설 - 물적 역량
  - ✓ 의료교도소 신설 - 물적 역량

26

##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 법무부 대책의 기대효과

#### ➢ 비구금적 형벌 및 가석방 활성화

- ✓ 형벌의 최후수단인 구금을 최소화 하고, 수형자의 재사회화 및 교정 부담 축소에 도움이 되는 가석방 활성화
- ✓ 재범 방지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 증진에 관한 효과에 대한 연구 기회가 될 수 있음

#### ➢ 불구속수사·재판 원칙 준수 및 소환조사 지양

- ✓ 과밀수용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결구금 인원 줄이기,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
- ✓ 헌법과 법률에 더욱 부합하는 수사 및 재판 관행 정착

#### ➢ 비대면 접견 활성화

- ✓ 화상접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접견권 보장 확대

#### ➢ 의료 인프라 확충

- ✓ 의료용품 확충, 의료교도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료일반병원 교정병동 설치 등

27

##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 남은 문제들

#### ➢ 수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 - 수용자 등의 불안감 완화

- ✓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에서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 강조
- ✓ 감염병 예방 및 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 등의 불안감 줄여야

#### ➢ 감염병 현황 및 대처에 관한 정보 공개 노력 - 행정의 투명성 제고

- ✓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이후 법무부의 대사회적 태도의 문제점 드러나

#### ➢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외부 역량 제고 노력 - 다양한 주체 간 이해 조정 능력 제고

- ✓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기본계획 협의체의 역량 미지수
- ✓ 교정청 신설 문제와도 연계되어야

#### ➢ 교정 인력 증원 노력

- ✓ 감염병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 교정행정 및 처우의 질과 직결된 인력 부족 문제

\* 참고: 강태경 등,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I: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KIC, 2019)

28

“감옥에 들어가 봐야 그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류층 국민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넬슨 만델라

2021년 제59회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 제2주제

# (아동) 성범죄자 효율적 처우 방안

-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발 표 : 이희정/법무부 심리치료과장
- 토 론 : 신기숙/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장  
김병배/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교수



## (아동) 성범죄자 효율적 처우 방안

-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이 희 정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br>개선방향 |
| II. 성폭력사범 현황            | V. 결 론                         |
| III.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                                |

### | 요약 |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분노,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교정 시설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상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개별적 특성에 따라 수준별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기본·집중·심화과정 이외에 최근에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 중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과정과 출소 후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효과의 지속을 위해 심화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유지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기기간의 감소, 재범 위험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과정 운영시간 배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개편 작업, 한국형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척도 개발, 교정기관 심리치료과의 신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폭력사범, 아동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재범률, 효과성

## I

## 서론

2017년 시작되었던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 보였던 많은 관심과 작년 말 조두순의 출소 전후 여러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소가 임박한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사실 등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느끼는 불안과 분노가 매우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된 계기도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대두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급격하게 성범죄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심리치료의 주된 목적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심리치료를 통해 수용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통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재범으로 발생할 피해자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 아동성범죄자를 비롯한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교정시설에 도입된 성폭력사범 교육교화프로그램은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증거에 기반한 실천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왔다. 2016년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개설되고 일선 교정현장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 II

## 성폭력사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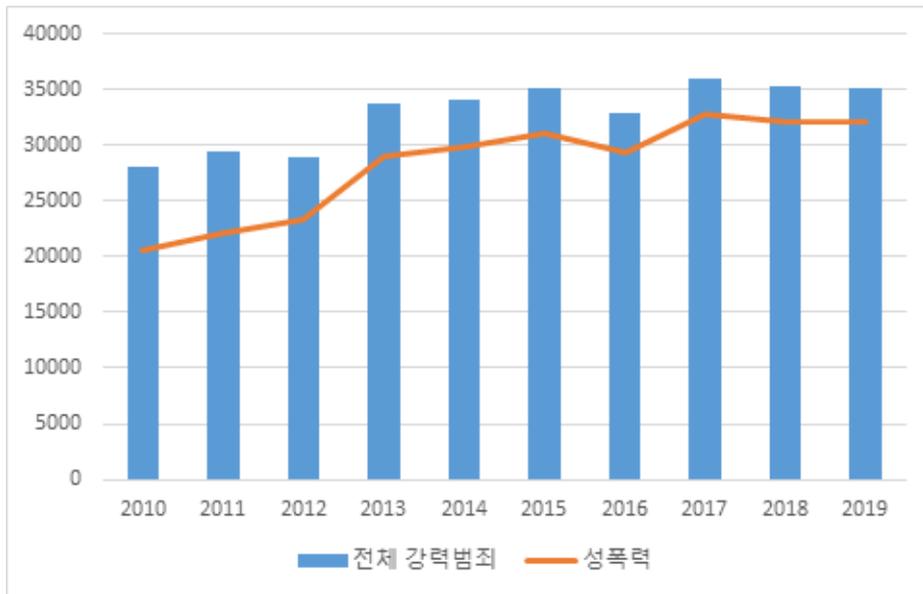
## 1. 성폭력사범 인원 추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20,584건)부터 2015년(31,063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약간 감소(29,357건)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큰 변동 없이 연간 약 32,000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2,029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범죄분석, 2020).

이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전체 강력범죄에서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10년 전체 범죄에서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73.2%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88.4%, 2019년에는 91.3%로 증가하였다. 2019년 성폭력범죄가 전체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대비 18.1% 증가한 것이다.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살인, 강도, 방화<sup>1)</sup>는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성폭력범죄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범죄분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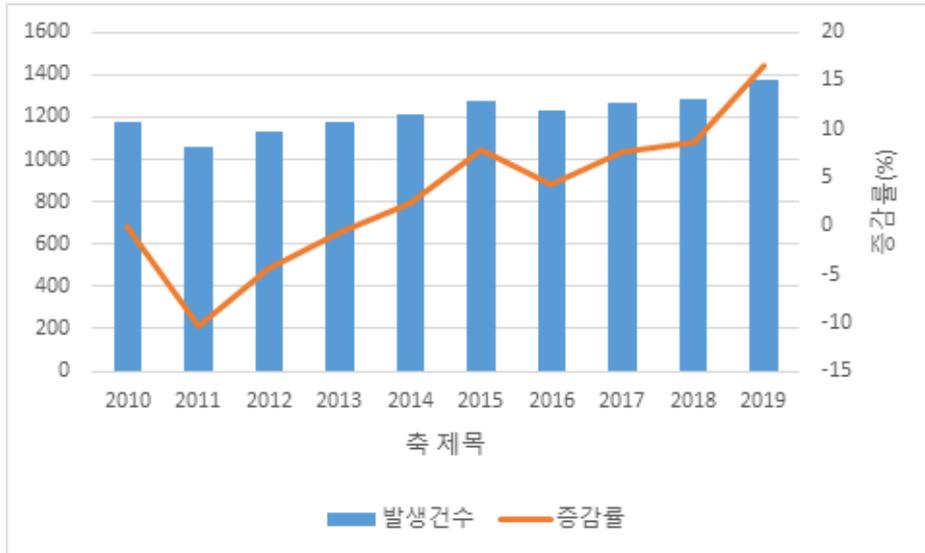


## 2. 아동성범죄 현황

성폭력범죄 중 13세미만 아동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80건에서 2019년 1,376건으로 증가하여 16.6% 증가율을 나타냈다.

1) 2010년 전체 강력범죄에서 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5%에서 2019년 2.4%로, 강도는 2010년 15.6%에서 2019년 2.4%로, 방화는 2010년 6.7%에서 2019년 3.8%로 감소하였다.

〈그림 2〉 13세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범죄분석, 2020)



2019년 발생한 아동성폭력범죄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73.5%로 가장 많았고, 강간/간음이 15.3%, 통신매체이용음란이 6% 등의 순이었다(범죄분석, 2020). 13세에서 20세까지의 성폭력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4.9%에 그치는데 비해 13세 미만의 성폭력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비중이 높았으며, 13-20세의 성폭력범죄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비율이 16.2%로 높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아동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자(범죄분석, 2020)

범죄유형	13세 미만 피해자	13세-20세 피해자
강간/간음	17.1%	24.8%
강제추행	73.5%	48.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4%	16.2%
통신매체이용음란	6%	4.9%
공중밀집장소추행	0.1%	3.3%
기타	0.9%	2.6%

2019년 발생한 아동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는 남성이 97.5%이며 여성은 2.5%로 나타났으며 범죄자의 연령대는 18세 이하가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1세-40세와 51세-60세에서 13.5%-14.4%의 범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13세-20세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63%가 30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아동성폭력범죄자 연령별 분포 (범죄분석, 2020)

범죄자 연령	13세 미만 피해자	13세-20세 피해자
18세 이하	18.4%	24.7%
19-30세	17.9%	38.3%
31세-40세	13.5%	13.2%
41세-50세	18.2%	10.3%
51세-60세	17.6%	5.3%
61세 이상	0.9%	2.6%

2019년 발생한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의 15.2%만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7%에 불과했다. 반면 13세-20세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32%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13세-20세 대상 성범죄자의 정신장애 비율은 2.2%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비해 낮았다.

### III

##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 1.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교정시설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출소 후 2주 내에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사건 등 성폭력사범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의 치료 및 교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08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및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등으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2009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성범죄자의 교정시설 내 치료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0년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HAGSOR)를 개발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10. 4. 15)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병과가 제도화<sup>2)</sup>되

어 교정시설 수용 기간 중 심리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서울 남부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가 처음으로 개원되었다.

2014년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구분 기준을 재범위험성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아동성폭력 사범과 일반성폭력사범으로 구분되어 실시하던 구분을 없애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수용자에 개별적 특성에 따라 수준별 심리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Static-99과 HAGSOR를 사용하여 개별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기본·집중·심화로 나뉘어 운영되는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이때 완성되었다. 그 후 2016년 9월에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심리치료과가 신설되었으며 2016년 11월 교정시설 내에 심리치료팀이 설치되어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되었다.

## 2.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목적은 성폭력사범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왜곡된 성의식 수정, 재범유발원인 분석 및 대처능력 향상, 피해자 공감 및 사건에 대한 책임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 대처능력 개발, 자기관리 능력 향상, 좋은 삶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은(기본·집중·심화과정) Static-99R과 HAGSOR를 통한 평가한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수형자에 맞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재범위험성 평가는 Static-99R과 HAGSOR의 정적평가 결과, Static-99R이 6점 이상이고 HAGSOR의 정적평가 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동적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HAGSOR의 정적점수와 동적점수를 합산한 범주 점수에 따라 집중과정과 심화과정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각 과정은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을 원칙으로 하고, 재범방지 모델(Relapse Prevention Model, RP)과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Risk, Need, Responsivity model, RNR)을 접목한 통합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2) 2011. 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병과가 법제화되었고, 2013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으로 이수명령이 필요적 병과로 전환되었음

기본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월 내외(주 1-2회 진행)의 기간 동안 전국 각 교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사전 및 사후평가, 개별면담이 포함되어 있다. 집중과정은 총 2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집중과정이 설치된 교정기관에서 진행되며, 기본과정보다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개별 수행자가 제출하는 과제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총 3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 동안 5개의 심리치료센터에서 진행된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주 5회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주 3회는 심리치료프로그램, 주 2회는 그 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심화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 사건의 발생과정의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자기 조절과 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그림 3〉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정통계연보, 2020)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사범의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기본·집중·심화 과정 이외에 추가적인 2개의 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에서 범죄내용이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범죄자 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의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한 특별과정을 2019년 개발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출소 1년 이내의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150시간으로 운영되며, 6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집단상담과 함께 깊이 있는 개별치료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효과 유지 및 체계적·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유지과정을 개발, 시범운영을 통하여 올 해부터 본격적

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유지과정에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심화과정 수료자 중  
에 잔형기 1년 이내의 성폭력사범이 참여하며 20시간으로 운영된다.

〈표 3〉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구 분	대 상	운영시간	운영기관
기본과정	재범위험성 저	100시간	전 교정기관
집중과정	재범위험성 중	200시간	안양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
심화과정	재범위험성 고	300시간	5개 교정심리센터
특별과정	프로그램 수료자 중 가학·변태적, 13세미만·장애인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150시간	전담심리치료센터
유지과정	프로그램 심화과정 수료자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20시간	의정부교도소 등 20개 기관

### 3.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재범위험성에 기초하여 과정이 구분·운영되는 현재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이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서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2015년부터의 수형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3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범에 영향 이 있다고 언급된 전자장치 착용여부, 자아존중감 사전점수, 아동성추행 사전점수와 Static-99R 총점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치료집단과 통제집단(비치료집단)을 비교<sup>3)</sup>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출소한 수형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을 할 확률이 29% 낮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이와 함께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재범률 분석에서 성인피해자 집단보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약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재범 감소 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3) 2015년에 출소한 총 7,614명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치료집단은 6,028명(약 79.2%)였으며 통제집단은 1,586명(약 20.8%)였음

## IV

##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 개선방향

## 1.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성폭력사범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를 보면 2016년 7,038명에서 2017년 6,428명으로 약간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up>4)</sup>. 2020년 성폭력사범 인원은 9,404명으로 2016년 대비 33.6% 증가하였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범도 2016년 대비 29.6% 증가하였으나 13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범은 34.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결수용자의 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범 중 미결수용자는 2016년 대비 79.8% 증가하였고,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범 중 미결수용자는 2016년 대비 52.1% 증가하였다.

2019년 실시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과정별 인원을 분석해 보면 84%가 기본 과정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중과정은 7.06%, 심화과정은 8.84%에 그치고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별 대상자 구분기준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큰 변화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성폭력사범의 증가 및 출소 후 재범위험성 감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특별·유지과정 등이 운영되는 등 심리치료 전담조직의 확충은 더딘 반면 심리치료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과정별 대상인원이 편중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 및 마약류사범의 이수명령 의무적 병과 시행<sup>5)</sup> 등 개별법상의 이수명령 병과제도 도입확대 추세에 맞춰 이수명령 병과 시간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운영시간과의 균형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범위험성 수준에 따라 심리치료프로그램 시간을 다르게 하되, Static-99R의 재범위험성 평가기준<sup>6)</sup>을 활용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낮은 집단은 기본과정에 편입하고 현재 100시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과정을 개편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현재보다 개별화하고 개인상담을 강화하여 보다 출소 후 재범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성폭력사범 인원은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출된 인원임

5) 마약류관리법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의무적 병과가 2020. 12. 4.부터 시행됨

6) Static-99R의 위험성 평가 기준: 0-1 매우 낮음, 2-3 낮음, 4-5 높음, 6 이상 매우 높음

이와 함께 그동안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정현장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재범위험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배분·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운영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 시간은 낮추고, 고위험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현재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전담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림 4〉 2019년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과정별 인원



〈표 4〉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사범 인원 추이

구 분	전체			13세 미만			13세 이상		
	소계	기결	미결	소계	기결	미결	소계	기결	미결
2020	9,404	7,719	1,685	1,511	1,288	223	7,893	6,431	1,462
2019	7,712	6,177	1,535	1,207	1,018	189	6,505	5,159	1,346
2018	6,538	5,339	1,199	1,068	917	151	5,470	4,422	1,048
2017	6,428	5,480	948	1,085	954	131	5,343	4,526	817
2016	7,038	5,953	1,085	1,166	1,042	124	5,872	4,911	961

## 2. 한국형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척도 개발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크게 두 가지로 검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치료 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 실시 전의 개별 수형자의 상태를 실시 후와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출소 후 재범률을 비참여자와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 총 11개의 효과성 평가척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

〈표 5〉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평가척도

척도명	원저자	비고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해외 개발
강간통념	Burt(1980)	국내 타당화(1999)
상태특성 분노표현	Spielberger(1988)	국내 타당화(1997)
충동성	Barratt(1983)	국내 타당화(1992)
아동성추행법 공감	Frenandez et al. (1999)	해외 개발
UCLA 고독감	Russel et al.(1980)	해외 개발
성을 이용한 대응	Cortoni et al. (2001)	해외 개발
대인관계반응지수	Davis(1983)	해외 개발
여성에 대한 분노	Check(1984)	해외 개발
적절한 성적환상	Johnston&Ward(1996)	해외 개발
주관적 안녕	한덕웅&표승연(2002)	국내 개발(2002)

조두순의 출소에 즈음하여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론 및 국회에서의 질의가 많았으나 현재 활용 중인 척도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별수형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변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일반인과 비교한 개별수형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척도는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서의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우며 국내 교정현실과 성폭력사범의 범죄유발요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한국판 평가도구의 개발, 그동안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평가도구를 우리나라의 교정현실과 전반적인 사회·문화 상황에 맞게 타당화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도구가 교정현장에서 활용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기보고식 검사가 가진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료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타인보고식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성폭력사범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일반인과의 비교가 가능한 기준 설정하는 방향을 추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 교정기관 심리치료과 신설 확대

2006년 성폭력사범 수형자 교화대책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교정시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은 그동안 프로그램의 세분화, 심리치료센터의 점진적 확대,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2016년) 및 정규조직 승인(2018년), 교정기관 심리치료과 신설(2020년 5개 기관)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정기관에는 심리치료과가 미설치되어 있고 보안과 내 심리치료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치료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두순 등의 출소를 계기로 국회·언론 등에서 심리치료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본부에서 교정기관까지 체계적인 심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담조직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수형자도 2016년 대비 2020년 7.5% 증가하였다. 작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히 어린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성폭력사범 및 이수명령 병과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수용기간 중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신종 성범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 심리치료과의 신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심리치료센터는 전국에 7개, 심리치료과가 설치된 교정기관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5〉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 증가 추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폭력사범(기결)	5,953	5,480	5,339	6,177	7,719
이수명령 병과자	5,035	4,980	5,211	5,324	5,417

## V

##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동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최근 발생 동향 및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통해 현재 교정시설에서 어떠한 시행 중인 성폭력사범 심리

치료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지 알아보았다. 성폭력범죄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그 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연간 약 32,000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범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개별 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구분이 이루어지는 절차,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이론적 모델 및 구성내용, 최근에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위험군의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과정,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출소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재범감소 효과를 목표로 하는 유지과정을 살펴보았다.

2006년에 교정시설에 도입된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 및 교화프로그램은 그동안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조직의 신설, 전문인력의 충원 등 많은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증가하고 있는 교정시설 성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개편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20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성폭력사범(기결 및 미결 포함)은 2016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기조 및 양형강화 여론, 성폭력사범에 대한 가석방 제한 등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조직과 인력의 확충은 느리게 이루어지는 반면 대상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가 있어야 한다. 대상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프로그램 참여까지 대기 인원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프로그램 참여까지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경우 부과된 이수명령을 마치지 못하고 출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을 외부 전문가 및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했던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기준과 과정별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11개 척도는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서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 전후 비교만 가능하여 개별수형자의 일반인과의 비교가 가능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프로그램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및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없이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제59회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록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



##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현장

1. 학회의 회장, 기타 임원 및 회원은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과 학회 활동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공익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표절할 수 없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한국교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학회는 회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세부규정”을 제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에 있어 오로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연구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 및 기타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윤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연구윤리현장을 실제 연구 활동과 대외 활동에서 구현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임원,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아래와 같다.
  - (1)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따온 글이나 단어, 아이디어 등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옮긴 경우
  - (2) 인용하고 출처를 밝혔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경우

- (3) 출처를 제시하였지만 인용부호 없이 다른 저술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4. “이중게재”라 함은 자신이 쓴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법학 및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이사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실무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회의 간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절차

**제10조(심사 배제)** 논문의 심사자가 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할 경우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 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4조(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해당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인사는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0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사후조치

제21조(한국연구재단 보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한다.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단순한 실수로 위의 표절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주의서한을 발송하여 경고 조치한다.
2. 게재논문을 학회학술지 『교정연구』에서 삭제한다.
3. 논문투고자를 향후 3년 동안 학회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표절 등의 예방을 조치) 표절이나 논문의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는 총회·이사회·학회 학술발표회 등의 기회에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회원에게 주지하며, “학회소식지” 등에 연구윤리 구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제25조(준용 및 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정학회의 회칙 등 학회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하며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학회 회장단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5장 보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2월 14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2월 11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11월 9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59회 한국교정학회 · 법무부 교정본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

